

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서

제1조 (목적)

본 변경계약은 기체결된 '경기도 아산시 신희리 372번지 외 부동산담보신탁계약' 상 우선수익자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우선수익자, 수익한도금액 변경)

기체결 계약상 우선수익자, 수익한도금액 및 주채무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○우선수익자 및 수익한도금액 변경

- 변경 전 -

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		
제1순위	성 명 (법 인 명)	동서울농업협동조합
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114136-0000337
	주 소	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15-9
	수 익 한 도 금 액	₩804,000,000.-
제2순위	성 명 (법 인 명)	김 [REDACTED]
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830106-[REDACTED]
	주 소	경기도 [REDACTED]
	수 익 한 도 금 액	₩1,200,000,000.-
제3순위	성 명 (법 인 명)	손 [REDACTED]
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651011-[REDACTED]
	주 소	서울시 [REDACTED]
	수 익 한 도 금 액	₩1,500,000,000.-

- 변경 후 -

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		
제1순위	성 명 (법 인 명)	스마트펀딩대부(주)
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110111-6009454
	주 소	서울 강남구 학동로 8길 10, 102 호(논현동,은솔빌딩 1층)
	수 익 한 도 금 액	₩2,600,000,000.-
제2순위	성 명 (법 인 명)	김 [REDACTED]
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[REDACTED]
	주 소	경기도 [REDACTED]
	수 익 한 도 금 액	₩1,200,000,000.-
제3순위	성 명 (법 인 명)	손 [REDACTED]
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651011-[REDACTED]
	주 소	서울시 [REDACTED]

수 익 한 도 금 액	₩1,500,000,000.-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○주채부자

- 변경 전 -

성 명 (법 인 명)	정창일
주 민 등 록 번 호 (법 인 등 록 번 호)	640502- [REDACTED]
주 소	[REDACTED]

- 변경 후 -

성 명 (법 인 명)	(주)가희종합개발
주 민 등 록 번 호 (법 인 등 록 번 호)	134811-0385692
주 소	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 257 번길 13, 1 층

제3조 (신탁부동산의 표시 및 신탁보수)

- ① 붙임1 기재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본 변경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는 금육백만원정 (₩6,000,000/부가세 없음)으로 신탁등기시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 또, 기지급된 신탁보수의 반환은 없다.
- ③ 신탁보수부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(세금)계산서를 발급하며, 추후 변경은 불가하다.

제4조 (기타)

본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기체결된 계약을 따르기로 한다.
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기와 같이 기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함에 동의하며, 계약서는 총3부를 작성, 각 1부를 보관하고, 1부는 등기시 사용한다.

2017. 12.